「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

[시행 2009.5.1.][행정법, 2008.10.28., 개정]

□ 개 요

이 법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긴급 상황에서의 구조 활동을 강화하고 신변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8년 4월 29일에 제9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정되었고, 2008년 10월 28일 제11기 전국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통하여 개정하였다. 2008년 10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6호로 공포하여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 목 차

원문	번역문
第一章 总则	제1장 총칙
第二章 火灾预防	제2장 화재 예방
第三章 消防组织	제3장 소방 조직
第四章 灭火救援	제4장 화재 진압 및 구조
第五章 监督检查	제5장 감독·조사
第六章 法律责任	제6장 법적 책임
第七章 附则	제7장 부칙